

#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1995년 8월 10일

총무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7월 27일 삼척시장 제출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7월 28일
- 다. 심사일자 : 제7회 삼척시의회 (임시회)  
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('95. 8. 10) 심사 · 의결

### II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홍성용)

#### 가. 제안이유

- o '95 시세조례 개정시 누락된 지방세 조례를 삽입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# 나. 개정조례안 주요골자

- o 천재등으로 인한 납입기한의 연장은 취득세등 신고납부기한 연장경우에만 적용됨으로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 경우도 "징수유예" 규정을 적용도록 함 (안 제7조)
- o 재산세 감면은 기 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지방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삭제 (안 제17조)
- o '95 개정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 (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부동산) 누락으로 관련조항 삽입 (안 제19조)

#### 다.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 : 별첨

### 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길석)

- 이번 시세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항과 고도성장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노력한 것으로
-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게 요구되고,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V. 토론요지 : 없 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VII. 심사결과 :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